

무배당 SAFE 연금보험

하나 HSBC 생명보험주식회사

확 인 서

무배당 SAFE 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0년 월 일

하 나 H S B C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 임 계 리 사 김 상 민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SAFE 연금보험

1. 보험종목 및 명칭

구 분	연금지급형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범위
(무)하나 SAFE 연금보험	종신연금(10년보증, 20년보증)형 [정액, 체증(5.10%)]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1형 (10년 이율확정형)	확정연금형 [7·10·15·20년형]	개인연금형
2형 (7년 이율확정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3형 (5년 이율확정형)		

2.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일시납	-개인연금형 :45~80세 -부부연금형 :48~80세	◎ 종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로부터 생존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는 가입한 날로부터 1형의 경우는 10년, 2·3형의 경우는 7년 이상 경과한 나이에 한함.

3. 가입나이

- 1형 : 만 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10)세
- 2형·3형 : 만 1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7)세

4. 납입보험료 한도

- 가.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시점에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100만원 이상 50억원 이하로 한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율확정기간 종료후부터 보험기간 중에납입가능하다.
 -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매회 10만원이상 만원 단위 금액으로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음.

6.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일시납보험료의 100%로 함.

7.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은 8. '나'에서 정한 최초 이율확정기간 및 8. '다'에서 정한 재설정된 이율확정기간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설정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에서 운용한다.

나.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1) 회사는 최초 이율확정기간 및 재설정된 이율확정기간 동안 해당 공시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의 자산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① 이 보험의 자산은 보험종류별 이율확정기간의 해당 이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공채 및 특수채, 국내 신용평가기관 2 곳 이상에서 신용등급 AA 이상으로 평가 받은 회사채, 유동성확보를 위한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을 그 주된 운용자산으로 한다.
- ② 자산(다만, 유동성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은 제외)의 평균 잔존만기는 부채 평균 잔존만기의 80~125%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한다.

(2) 다음의 경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호에서 정한 자산 운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3 개월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금리 급변, 대량 해약 등의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② 운용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③ 운용자산의 즉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3)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설정시점부터 6 개월 이내의 경우 또는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총 자산이 1,000억 미만인 경우 회사는 (1)호 및 (2)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특별계정의 자산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평가한다.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① 보험료를 납입한 후 약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3 항에 따라 승낙이 완료된 경우
- ②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매월 1일부터 15일 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다만, 각 이체일이 영업일 이외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이체하는 것으로 한다.

- ① 보험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③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장계약 순보험료와 납입후유지비를 총당하는 경우
- ④ 이율확정기간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
- ⑤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3) (1)호 및 (2)호에 있어서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보험업감독규정 제 5-7 조(특별계정 관련 자금 이체)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8.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호의 공시이율 중 이율확정기간 중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회사가 1형(10년 이율확정형), 2형(7년 이율확정형), 3형(5년 이율확정형)별로 각각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가입시점의 보험종류별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점부터 각각 최초 10년, 7년, 5년간은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공시 이율 확정기간(이하 "이율확정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매월 1일에 이 보험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공시 이율을 정하여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은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이율확정기간 중

$$\text{공시이율(\%)} = \text{기준이율} - A$$

- 기준이율 : 이율확정기간이 10년, 5년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월 공시하는 10년만기, 5년만기 국고채권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을 매월 1일과 16일에 정하여 적용한다. 위의 평균값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3 번째 영업일에서 12 번째 영업일까지의 10 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이율확정기간이 7 년인 경우는 위에서 계산한 이율확정기간 10 년과 5 년의 국고채권 수익률의 평균값을 직선보간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 A :

1형(10년이율확정형)	2형(7년이율확정형)	3형(5년이율확정형)
0.2%	0.15%	0.1%

(2) 이율확정기간 이후

- ①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회사는 운용자산 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정한다.
- ②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내부지표 + 외부지표) / 2

■ 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 A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운용 자산의 월말 잔액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 외부지표 산출식 = $(B_1 + B_2 + B_3) / 3$

- B_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_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B_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무보증 회사채 (AA-)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64일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 수익률로 한다.
-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의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 지표 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세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내부지표 및 외부지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 86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 회사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의 종료일 전까지 동일한 이율확정기간(1형(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10년, 2형(7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7년, 3형(5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5년)의 재설정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다'호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이 재설정 되는 경우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나'호에서 정한 최초의 이율확정기간 종료일 다음날의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로 하며, 새로운 이율확정기간 동안 변동없이 확정 적용한다. 다만, 계약자가 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율확정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마. '다'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이율확정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잔여기간이 새로운 이율확정기간보다 짧은 경우 계약자는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을 신청할 수 없다.

바. '다'호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에 장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이율확정기간을 최초 이율확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이율확정기간으로 재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 1형(10년 이율확정형)과 2형(7년 이율확정형)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각각 1.0%와 0.5%의 금리(이하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이라 한다)를 더하여 적립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보험의 1형(10년 이율확정형)과 2형(7년 이율확정형)의 계약이 보험계약일로부터 각각 10년과 7년 전에 해지되는 때에는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한다.

자.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율확정기간에 관계없이 연복리 2.0%로 적용한다.

9. 기타

가.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2)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 (3)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나.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 시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는 연금계약 적립금액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 (2)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최초 이율확정기간 중

$$MVA = 1 - \left\{ \frac{1 + \text{보험가입시점의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0.5\%} \right\}^{\text{잔여월수}/12}$$

▪재설정된 이율확정기간 중

$$MVA = 1 - \left\{ \frac{1 + \text{재설정된 이율확정기간 개시시점의 공시이율}}{1 + \text{해지시점의 공시이율} + 0.5\%} \right\}^{\text{잔여월수}/12}$$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의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한다.

- (3)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이율확정기간 종료후부터 보험기간 중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한도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3) (1)에 따라,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10%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4)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적립액에서 인출가능하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감독규정 제 4-14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하며, 예정신계약비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신계약비율 최고한도를 적용한 신계약비」의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이 보험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